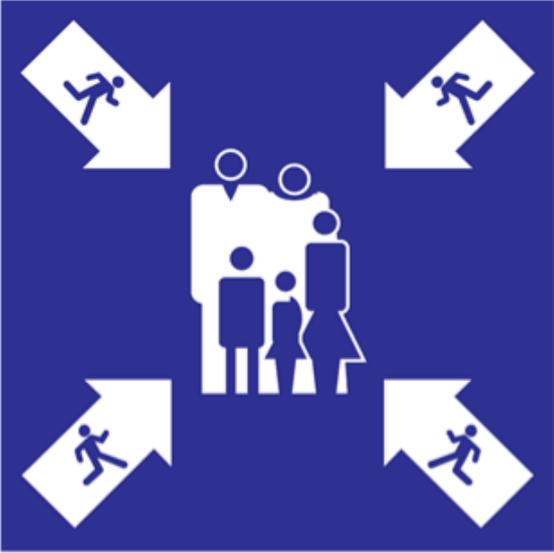
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92~92p 번호 : 252	문제-그림	<p>[보기의 삽화]</p>  <p>[선지] 갑. <b>비상집합장소</b></p>	<p>[보기의 삽화]</p>  <p>[선지] 갑. <b>소집장소</b></p>
		수정 사유	개정 법령 반영 및 출제처의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
100~100p 번호 : 277	문제-문항	<p><b>해사안전법</b> 상 안전수역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	<p><b>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</b> 상 안전수역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</p>
		수정 사유	출제처의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(소관 법령이 다른 오류)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24~224p 번호 : 599	해설	<p>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(<b>해사안전법</b> 시행규칙 <b>7</b>조 제2항)  <b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.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해양경비 ·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<b>이나</b>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</li> <li>●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 · 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</li> </ul>	<p>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(<b>해상교통안전법</b> 시행규칙 <b>6</b>조 제2항)  <b>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해양경비 ·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</li> <li>●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<b>또는</b>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</li> <li>●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</li> </ul>
		수정 사유	개정 법령 반영(출제처의 출제 당시 법령 미제정 상태였음)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